

코리아 일보

The Korea Daily

“징용 한인 원폭피해 일본 정부가 배상을” 히로시마 고법 판결

일제시대에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
당했다가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에 대

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
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.

히로시마(廣島) 고등법원은 19일
한국인 이근목(78)씨 등 징용근로자
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(三菱)
중공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
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
4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. 청

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
이다.

원고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강제로
끌려와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공
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보았다.

그러나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원
호 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
했다.